

농약의 잔류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분하나?

토양·작물 잔류성농약 등록·사용 못해

토양증 반감기 및 작물증 잔류량 따라 구분

홍보부

병해충과 잡초를 방제하기 위하여 살포한 농약은 대부분 작물체에 부착되며 일부는 토양에 떨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어 없어 진다. 살포증 대기중으로 날아가 흩어진 그늘에 놓인 햇살은 다시 비나 관개수의 이동에 따라 강이나 하천으로 이동한다. 이와 같이 살포된 농약이 자연환경중에 존재할 때 이를 잔류농약이라고 하며 이 중에서 연구와 관심의 주요대상이 되는 것은 농작물과 토양증의 잔류농약이다.

토양잔류의 경우는 성질이 다른 2가지 이상의 토양을 선택하여 실내와 포장에서 농약을 처리하고 농약의 분해속도와 반감기를 구하여 그 잔류기간과 후작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게 된다.

반감기란 토양에 처리한 농약증 절반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토양증 반감기가 180일 이상인 농약으로 사용한 결과 그 성분이 농경지에 잔류되어 후작물에까지 잔류되는 농약은 토양잔류성농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 우리 나라에서 사용중인 농약의 토양증 반감기

(성분수, 개)

구 分	토양증 최장 반감기(일)						계
	<15	16~30	31~60	61~120	121~180	>181	
살균제	34	27	15	11	4	-	91
살충제	52	27	23	18	4	-	124
제초제	35	16	9	11	2	1	74
생장조정제	7	3	-	1	-	-	11
계	128 (42.7%)	73 (24.3)	47 (15.7)	41 (13.7)	10 (3.3)	1 (0.3)	200 (100)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농약의 토양중 반감기가 1년이상인 농약을 토양잔류성농약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사용중인 농약의 대부분(95%이상)이 토양반감기가 120일 미만으로 짧아 토양중 농약잔류의 우려가 없다.

농약의 작물잔류는 우리가 먹는 식품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관심이 많은 사항이며 수확한 농산물 중에 잔류되어 있는 농약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또 그 농산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에게 해로운 수준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잔류성을 평가하게 된다.

특히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량 조사결과 잔류허용기준치를 넘는 농산물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폐기 조치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은 식품 중에 함유되어 있는 농약의 잔류량이 사람이 일생동안 그 식품을 섭취해도 전혀 해가 없는 수준을 범으로 규정한 양을 말하며 설정방법은 농약의 「1일섭취허용량」, 「국민평균체중」 및 「식품평균섭취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의하여 계산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설정하고 있다.

$$\text{농약잔류허용기준} = \frac{1\text{일농약섭취허용량} \times \text{국민평균체중 (50kg)}}{(ppm) \quad 1\text{일 } 1\text{인 식품(농산물) 평균섭취량}}$$

잔류허용기준은 급성독성인 농약의 중독과는 관계가 없으며 일생동안의 건강을 고려하여 설정한 만성독성의 개념이다. 따라서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 식품일지라도 잔류허용기준 미만인 농산물은 우리 몸에 전혀 해롭지 않으며 과학적인 견지에서 볼 때 병해충을 방

제하지 않아 작물이 자체적으로 만들어 내는 병해충 방어물질(과학적으로 안전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과 병해충이 만들어 내는 독성물질(아포리투신 등)이 함유된 농산물보다 훨씬 안전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잔류허용기준이 모든 농약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살포한 농약이 최대로 잔류하여도 전혀 해가 없는 안전한 농약 등은 잔류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농산물 및 농약의 종류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다르지만 일생동안의 만성독성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고독성농약이라고 해서 잔류허용기준이 낮은 것이 아니고 저독성농약이라고 해서 높은 것이 아니다.

정부(보건복지부)에서는 1991년까지 쌀, 보리 등 53종 농산물에 대해 32종 농약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시행해 왔다. 1992년 1월 1일부터는 국민 건강보호 및 안전농산물 유통을 위해 5종 농약, 5개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여 총 56개 농산물 38종 농약에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고 이와 같은 잔류허용기준의 추가 설정이 계속돼 1999년 12월31일 현재 203종 농약 성분, 104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시행하고 있다.

이와같이 정상적인 사용방법으로 농약을 살포하였을 때 잔류기간이 너무 길어 수확한 농산물중의 잔류량이 잔류허용기준을 넘을 위험이 있는 농약은 작물잔류성농약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래 잔류되는 농약은 환경오염은 물론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작물잔류성 및 토양잔류성 농약의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농약정보**|